



제429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구체화 등 〉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22호)

2025. 1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내용 구체화 등(제4조제2항 신설) ...	2
2.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제10조제5항)	9
3. 개정안 부칙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중오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1. 5.

3. 회 부 일 : 2025. 1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0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내용 구체화 등(제4조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④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⑤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및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 및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생략) <u><신설></u>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u>

② (생 략)	<u>관한 사항</u> 2. <u>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u> <u>활성화에 관한 사항</u> 3. <u>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u> <u>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u> <u>사항</u> 4. <u>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u> <u>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에</u> <u>관한 사항</u> 5. <u>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및</u> <u>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u> <u>사항</u> 6. <u>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 및</u> <u>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u> <u>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법 시행령에서는 기본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²⁾.

1)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2)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현행법에서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기본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집행명령으로써 시행령에서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조제4호)’을 제외하고 법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1호),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호) 및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3호)의 경우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상향규정하고,

학생선수³⁾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의 경우(시행령 제4호의2) ‘학생운동부 운영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5호)의 경우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가하였음.

□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추가하였음.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안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비교]

시행령	개정안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	4.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의2. <u>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u>	5.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및 <u>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6. <u>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u> 및 학생의 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를 <u>위하여 필요한 사항</u>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시책의 수립 등 국가(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책임·의무에 관한 규정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책무를 규정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유도적 성격을 가짐⁴⁾.

□ 개정안은 시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일부의 경우 상위 규범인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바, 동 사항들의 경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는 것으로, 행정작

4)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5., 국회사무처 법제실, pp. 255~257

용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되므로 시책 수립시 해당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기본 시책 수립 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도 법에서 규정하려는 바, 동 사항도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는 것임.

□ 동법의 목적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⁵⁾,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⁶⁾ 등의 경우 동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⁷⁾에 해당하는 등 동법의 목적과 동일한 취지로 보임.

□ 다만, 동 조항은 시책 수립에 관한 것으로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 성격이 법률의 입법목적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

5) 「학교체육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를 선정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스포츠 활동(연습 및 강습, 대회 및 리그 운영)을 실천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다양한 모델 발굴·확산하고자 하며, 단계별(학교-교육청-전국 단위)·수준별(발달 단계·경기력 등 고려) 학교스포츠클럽의 점진적 도입으로 학생이 참여기회를 확대하려고 함.

7)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및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의 경우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용되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적 책무를 규정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지원 등의 경우 이미 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에 시책 수립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등 학교체육 활성화의 수단적 조치들은 교육과정 개정, 교육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정책적 방향이 가변적일 수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의 경우 학교 수 감소 등에 대응하고자 초·중학교 단계에서 기존 단일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운동부를 ‘중점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스포츠클럽 등으로 전환·운영 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 중인바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8) 참고자료 참조

□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은 학교, 교원, 학생, 교육과정 등 정책 여건 및 국가·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정책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률 체계(법기본 시책 수립, 시행령세부 사항)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안 제2항제1~4호, 제6호 사항은 현행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제4, 5호 사항은 법 제10조, 제11조에 별도 규정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을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이미 시행 중이며, 법 제6조는 학교의 장에게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내·외 체육활동의 내실화·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⁹⁾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⁰⁾.

□ 시도교육청¹¹⁾의 경우 개정안은 이미 동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본 시책에 포함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시 기본 시책 수립의 경직성이 우려되므로 신중 검토 의견임.

9) 학교 단위에서 지역과 학교 여건, 학생 흥미와 선호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개정안이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며,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적 여건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시도별 시책(시도별 학교체육 기본 방향)을 마련·시행하는 점을 고려,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임.

11) 울산교육청, 경기교육청, 경북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4개 교육청

2.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제10조제5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 ④ (생략) ⑤ 학교의 장은 <u>교육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u> <u>되, 교육부령으로</u> ----- ----- -----.

나. 검토의견

-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하는 것으로¹²⁾, 현행법은

12)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¹³⁾.

-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은 ①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모든 중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동아리 활동으로 주당 1~2시간 운영하여, 3년간 총 136시간 운영)과 ②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여건·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계획하여 운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고,

2024년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1,097개교에서 총 13만 7,253개의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되었고, 전체학생수(4,837,933명) 대비 67%에 해당하는 3,235,873명이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구 분	초	중	고
①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
②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	○	○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창체 동아리** 활동에서 **매 학기 34~68시간**(주당 1~2시간) 운영

자료 : 교육부

13)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단위 : 개,교,명,%)

구분	클럽 현황			학생 현황		
	클럽수 (A)	전체학교수 (B)	학교당 클럽수 (A/B)	학생수 (a)	전체학생수 (b)	전체학생수 대비 비율(a/b)
초	102,395	6,183	약 17개	2,230,786	2,495,005	89%
중	19,916	3,272	약 6개	601,991	1,332,850	45%
고	14,942	1,642	약 9개	403,096	1,010,078	40%
계	137,253개	11,097교	약 12개	3,235,873명	4,837,933명	67%

※ 제공 : 교육부[출처 : 나이스 통계('24.12.기준), 교육통계('24.4.기준)]

□ 스포츠 종목 중에는 ‘줄넘기’에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하였고, 그 다음으로 ‘걷기’와 ‘맨손체조’로 나타났다.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단위 : 개,명)

구분	종목	클럽수	등록 학생수
1	줄넘기	45,583	1,042,429
2	걷기	22,277	611,874
3	맨손체조	8,774	208,752
4	피구	7,535	184,112
5	배드민턴	6,328	126,347
6	축구	6,298	158,854
7	기타(其他)	4,178	104,528
8	농구	3,595	67,388
9	배구	2,955	75,472
10	스포츠스태킹	2,730	60,945
11	풋살	1,884	34,808
12	탁구	1,334	24,426
13	육상	1,267	25,602

구분	종목	클럽수	등록 학생수
14	티볼	1,045	23,953
15	플라잉디스크	883	22,047
16	킨볼	482	9,988
17	방송댄스	481	7,418
18	빅발리볼	439	15,943
19	넛볼	413	11,155
20	자전거	407	3,490
21	요가	399	7,987
22	족구	322	5,594
23	플로어볼	301	5,808
24	야구	298	5,933
25	발야구	278	8,982
26	창작댄스	259	4,950
27	치어리딩	222	3,626
28	제기차기	220	4,614
29	Extreme games	219	5,415
30	보디빌딩	219	3,591
31	전통놀이	213	4,444
32	키즈런	195	3,773
33	츄크볼	186	5,231
34	골프	168	2,954
35	마라톤	166	4,110
36	3x3 농구	156	2,807
37	핸드볼	144	4,407
38	인라인롤러	142	1,408
39	댄스스포츠	132	2,997
40	저글링	104	2,221
41	수(手)족구	102	1,695

※ 제공 : 교육부[출처 : 나이스 통계('24.12.기준), 클럽수 100개 이상 종목만 추출]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¹⁴⁾를 선정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스포츠 활동(연습 및 강습, 대회 및 리그 운영)을 실천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다양한 모델 발굴·확산하고자 하며, 단계별(학교-교육청-전국 단위)·수준별(발달 단계·경기력 등 고려) 학교스포츠클럽의 점진적 도입으로 학생이 참여기회를 확대하려고 함.
- 개정안은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이며,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¹⁵⁾, 기본적으로 취미활동으로 보아야하는데, 취미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¹⁶⁾, 학생들의 선호가 반영된 선택을 바탕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학생들 중에는 체육활동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이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14) 관련 국정과제: (100-4)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주관)

15)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취미 :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바, 학생들이 비자발적 또는 선호하지 않는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임¹⁷⁾.

□ 또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스포츠클럽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장소와 장비(도구)가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의 경우 학교장이 단위 학교에서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있는데¹⁸⁾,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다양한 중

1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에서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방과 후 활동의 경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II.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설계의 원칙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5)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2. 학습자 맞춤형교육 강화

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

1) 지역 및 학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바)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18)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를 총괄·기획하는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하고 업무 수행 시 수당 지급 가능, 이때 지급 규모 등은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은 별도 없고, 학교 소속 교원 중 학교장이 지정·운영하고 있음.

- (초등) 일반적으로 체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사 또는 체육전담교사*가 담당

* 초등학교에서 학교의 수요에 따라 특정 교과목(체육, 영어 등)에 대한 수업 지도를 전담하는 교원으로 학교장이 학교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운영

- (중등) 일반적으로 체육교사 등이 담당

※ 지역의 특수성 및 학교 규모 등에 따라 운영의 방식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

목을 지도할 수 있는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가 추가 종목에 대한 지도를 맡게 되거나 신규로 전담교사를 지정하는 경우 교사들의 업무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학교 예산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므로 내실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현행 법 제2조제5호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여 법 제정의 취지와 상반되며,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및 학교의 장에게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강제하고 있어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다양한 교육활동 요구(체육, 예술, 기타 취미 활동, 학업 보충 등)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므로, 개정의 필요성, 현행 법률과의 관계,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⁹⁾.

19) 울산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1인 1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법률로 의무화할 경우, 지역별 학교 현장의 운영 여건(공간, 인력, 기자재, 학생 흥미, 교원 업무 부담 등) 등이 달라 일률적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더불어 학생 자율성, 학교장 판단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침해 등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여 교육 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 검토 의견임.

3.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하므로, 법 개정 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참고자료] - 시도교육청(경남, 전북, 전남)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15.] [경상남도조례 제5857호, 2025. 5. 15.,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2.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육성 종목의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거점학교 역할 수행을 위해 일반학생 및 다른 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8조(중점학교 지정) ① 교육장은 학생선수 육성 종목의 저변 확대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위한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시·군별로 1개 이상의 중점학교(이하 “중점학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점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초등학교·중학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육성 종목의 저변 확대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필요로 하는 학교
2. 육성선수의 요건을 갖춘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
3. 지리적 여건이 육성선수의 교통에 유리한 학교
4. 그 밖에 교육장이 중점학교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9조(중점학교스포츠클럽의 구성) ①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선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의 장이 중점학교의 장에게 육성선수로 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필요한 인적사항과 육성 종목 등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육성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육성과 육성선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지원계획에 준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중점학교스포츠클럽 지원) 교육감은 중점학교스포츠클럽과 육성선수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1. 14.]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941호, 2025. 11.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스포츠클럽이란 “학교스포츠클럽”과 “전문스포츠클럽”을 통칭한다.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5.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로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다음 각 목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가.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를 경기단체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전문스포츠클럽

나.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학교에서 육성이 어려운 학교운동부를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단체나 클럽에 위탁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전문스포츠클럽

8.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제9조(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서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종목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사단법인·경기단체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운동부가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1.10.>

제10조(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자체의 육성이 어려운 학교운동부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을 선정하고, 관련 사무를 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1.10.>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2.] [전라남도조례 제5631호, 2022. 12. 22.,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클럽을 말한다.

가.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및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나. 거점형 스포츠클럽: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제6조(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생 체육활동 확대 및 지원

2. 체육 인재 육성 및 지원

3. 훈련장 등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체육 종목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육 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